

질의응답

Q1. 5개 기관만 선정 예정인데, 의무배치시설에 50%이상(3개 기관) 우선 선정이면 기초문화재단은 2곳만 선정되나요?

[답변]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인 국·공립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화의 집을 보유한 기초문화재단도 의무배치시설에 해당됩니다.

담당자
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
손주애 031-853-9831

질의응답

Q2.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과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중복지원 가능한가요?

[답변] 네, 가능합니다.

담당자
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
손주애 031-853-9831

질의응답

Q3. 문화예술교육사가 해당 사업의 프로그램(프로젝트) 기획 및 운영 업무가 아닌 선정기관 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나요?

[답변] 네, 가능합니다. 단, 해당 사업의 프로그램(프로젝트) 기획 및 운영함에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.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
<문화예술교육사 업무 범위>	<지양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업무 범위>
1.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. 문화시설의 특성에 따른 제반 업무 (관련 행정 업무 및 회의 참석, 전시장 관리 등) 3. 전 직원이 참여하여 담당하는 업무 4. 이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실무 경험을 위한 타 사업 보조 등 ※ 단, 제반 업무 등이 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에 대한 협의 필요	1.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주강사 및 보조강사 역할 2. 주차장 관리, 단순 자료 복사, 전시장 청소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아닌 업무 3.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한 업무, 외주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체인력 등

담당자
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
 손주애 031-853-9831